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4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을 지정하여 고시 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취소 요청한 단체에 대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1. 공익법인 신규 지정(1,058개)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1.1.1. ~ 2023.12.31. (3년간)

(사)고령신씨장학회  
(사)세로토닌문화  
치재 사회적협동조합  
(사)캠프리딩코리아  
(재)한국공간복지재단  
(사)통일시대보건의료포럼  
(사)청년의 뜰  
(사)한국주니어테니스선수육성후원회  
(재)중도육영재단  
(재)영일고등학교동문장학회  
(사)한국주니어테니스협회  
마을학교사회적협동조합  
(재)에스비에스문화재단  
(사)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사)좋은세상에  
(사)강서구사회적경제협의회  
(사)한국비비에스중앙연맹  
(재)홈플러스 이파란재단

## 2. 공익법인 재지정(410개)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1.1.1. ~ 2026.12.31. (6년간)

(사)사랑담는 사람들  
(사)한국위기관리연구소  
(사)아이섹 어소시에이션 코리아  
(재)대한국인  
(재)태진문화재단  
(사)강동문화원  
(사)나눔플러스청소년연합  
(재)행복한나눔  
(사)한국장애인방송연기자협회  
(사)여성가족지원네트워크  
강서문화원  
(사)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  
(사)한국뉴스포츠협회  
(사)함께하는 희망 나눔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사)한국민사집행법학회  
(사)한국유아교육학회  
관악문화원  
(사)한국회복적사법정의센터  
(사)한국경영사학회  
(사)한국문화교육협회  
(재)구로희망복지재단  
구로문화원  
(사)한국주거복지협회  
(사)하나로복지회  
(사)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사)김영옥평화센터  
(사)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사)에버서번트  
(사)공공네트워크  
(사)한국노년복지연합  
(사)푸른한국

(사)에이치투오청소년사랑품앗이운동본부  
 은평문화원  
 (사)국제교류협력기구  
 (사)물푸레생태교육센터  
 (사)마을과 사람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특수법인 송파문화원  
 (사)사랑나눔에덴복지  
 (재)심향  
 (재)한국핸드볼발전재단  
 (재)자유언론실천재단  
 (사)해외입양인연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사)이북5도새마을회  
 (사)보건교육포럼  
 사일구혁명공로자회  
 (사)나란히  
 (사)한국모금가협회  
 종로문화원  
 (재)에스디엑스  
 (사)선진통일건국연합  
 (사)대한민국사랑회  
 (사)종로구새마을회  
 (사)한국시민자원봉사회 청소년봉사단연맹  
 (사)녹색전환연구소  
 (사)비엔브랜드  
 (사)아시아미래연구원  
 (사)청소년문화예술센터  
 중랑문화원  
 (사)대한민국통일문화창작진흥회  
 (재)같이 걷는 길  
 (사)한서문화예술협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통일아카데미

(사)휴먼몽골사업단  
 (사)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  
 (사)스포츠닥터스  
 (재)두양문화재단  
 사회적협동조합 좋은이웃컴퍼니  
 (사)한국공유정책연구원  
 (사)음식폐기물환경연구원  
 (사)남동이행복한지역재단  
 (사)대한유소년클럽야구협회  
 다운상생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사)다음누리  
 (사)한국관소리보존회  
 (사)대구관광뷰로  
 (사)강남문화진흥회  
 (사)한중청년우호협회  
 (사)라온복지회  
 (재)넥스트챌린지  
 (사)루체 디 무지카  
 (사)진주대첩기념사업회  
 온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사)함께하는 행복한 돌봄  
 (사)낙천노인봉사회  
 (사)상주시민프로축구단  
 (사)한국스마트미디어협회  
 회현마을공동체 회현당사회적협동조합  
 (사)근본불교 케이선  
 (사)한국국방기술학회

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